

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”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.

1.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

가. ~ 다. (생 략)
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
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
세대상 토지가 다음의 구분
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
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
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
건축 중[주택 멸실 후 주택
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
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
1)의 경우에는 3년 동안, 2)의
경우에는 5년 동안 주택을 건
축 중인 것으로 본다. 다만,
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
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
우는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
로 보지 않되, 2)의 경우로서
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
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

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for each row.

1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